

한국우주과학회 태양우주환경 분과 회칙

제 정 2014. 9. 30.

제 1 조 (목적)

분과 회칙은 한국우주과학회 태양우주환경 분과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활동사항)

본 분과는 태양우주환경 분야에서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한다.

1. 분과 중심의 학술 모임개최 및 그 교류
2. 태양우주환경 관련 기관 간 협력 및 공동연구 추진
3. 국가/국제차원의 태양우주환경 분야 장래계획 논의 및 정립
4. 태양우주환경 연구 및 관련기술 진흥에 대한 지원과 건의
5. 기타 본 분과회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제 3 조 (구성)

- ① 분과 회원은 태양우주환경 분야의 연구자 및 관련 업무자로서 분과 회비를 납부한 한국우주과학회 정회원으로 한다.
- ② 분과는 위원장 1인, 운영위원 10인 이내와 간사 1인을 둔다. 단, 분과 운영 등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1~2인의 고문을 둘 수 있다.
- ③ 위원장은 분과총회에서 직접 선출하며, 회원 1/2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. 총회 불참 회원은 위임장으로 출석을 대신할 수 있다.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, 운영위원 및 간사는 위원장이 선출한다.

제 4 조 (위원장)

- ① 위원장은 분과 업무를 총괄하며 분과총회 및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고 회의의 의장이 된다.
- ② 위원장은 다음 사항을 학회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 1. 선임된 위원회의 명단
 2. 분과의 운영사항

제 5 조 (운영위원회)

운영위원회는 제2조의 분과 활동사항에 대한 안건을 심의·의결하고 주요 결정사항은 위원장이 분과총회에 보고한다.

제 6 조 (총회소집)

정기총회는 연1회 개최하며 그 외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소집한다.

제 7 조 (재정)

분과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은 회원 1인당 연 10,000원의 분과회비로 유지하며 일부를 한국 우주과학회에서 보조받을 수도 있다.

제 8 조 (회칙의 개정)

분과의 회칙은 분과 총회에서 개정하며 그 의결은 회원 1/2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다.

부 칙

이 분과 회칙은 태양우주환경 분과 총회의 승인을 받은 2014년 9월 30일부터 유효하다.